

개발도상국의 특허제도 고찰(完)

목 차

- I. 머리말
- II. 특허제도의 변화
- III. 국제수준에서의 재검토
 - 1. 개도국입장에 있어서 파리조약 재검토 및 통일화조약안
 - 2. 국제조약 가맹현황
- IV. 개도국의 특허법
 - 1. 자국을 위한 특허법과 국제적 조정
 - 2. 현행특허법의 비교검토
- V. 맺는말

〈고딕은 이번號, 명조는 지난 號〉

〈前號에서 계속〉

V. 맺는말

대만, 멕시코는 최근 特許法의 국제적 조정을 목표로 改正하여 왔다. 我國이 파리조약에 가맹한 것은 1980년이다. 이 시기는 자주기술 개발체제를 정부주도 형으로부터 민간주도형으로 이행시키려 하고 있는 시기였다. 아국의 特許制度의 國際化는 파리조약 가맹을 계기로 추진되고 있었지만 韓·美 知的財産權 교섭의 결과 급속히 선진국법과의 조정을 실현하였다. 대만의 특허법은 아국만큼 선진국형으로는 되어있지 않다. 대만은 파리조약 등에 가맹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므로 特許制度의 國際化에는 그다지 열성적이 아니었다고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미·대만간 知的財産權保護 교섭을 계기로 하여 특허법의 정비가 행해지고 있다. 멕시코는 1976년에 개발도상국의 특허법을 목표로 革新的인 法律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1982년의

경제·금융위기를 계기로 하여 개발전략이나 경제정책의 재조명이 행해져 오고, 멕시코는 1986년에 GATT에 가맹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과 미국간의 密接한 경제관계가 發明·商標法 改正을 필요로 하였다. 1987년 發明 商標法은 不實施에 대한 特許權의 強制的 改正後로 하였다. 이것은 현행 파리조약5조A의 규정과 국내법과의 조정이다. 同條約의 준수라고 하는 점에서는 필리핀 특허법의 改正案은 불실시에 대한 강제실시권의 허여에 관해서는 특허부여 일로부터 2년후를 3년후로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1989년에 新特許法을 제정하였지만 1955년에 특허법안이 의회에 제출되고 나서 35년 가까이 흐르고 있다. 이것은 특허법 제정의 의의나 동법의 내용에 관하여 오랜 동안 의회에서 합의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파리조약5조A의 규정이나 선진국법과의 조정은 2년후에는 특허법이 시행되어 몇 년인가 운용되기 때문일 것이다.

브라질이나 인도는 약20년전에 개발도상국을 위한 특허법이라고도 할만한 법률을 제정하였지만 아국과 같이 선진국법과의 조정은 이루어져 오지 않았다. 양국은 발전도상국의 입장에서 서서 파리조약을 재검토해야만 한다고 하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양국 공히 선진국으로부터 高度技術을 導入하여 산업, 기술발전을 꾀하여 가야만 하고, 미국으로부터의 특허법의 改正 요청도 강하다. 그렇다면 NIES나 그것에 계속되는 듯한 기술력을 가지는 국가는 언제까지나 자국을 위한 특허법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과의 2국간 교섭에서 특허법의 改正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도식은 피하여야만 한다.

海外特許情報

이것은 著作權法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보호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다. 파리 조약과 같은 國際條約에 있어서 발전도상국을

위한 특허법 등에 관하여 國際的 合議를 필요로 할 것이다.

구분	特許法 (最初制定年)	特許對象이 되지 않는 發明 (飲食物, 醫藥, 化學物質)	存續期間 (起算日)	實施義務 (不實施에 대한 制裁措置)	特許要件 (新規性判斷 基準)
日本	1959~87年法 (1885年)		20年限度(出願日) 15年(出願公告日) 醫藥·農業特許는 5 年 延長可	實施 正義 有 強制實施權 (出願日로부터 4年後) 取消 無	出願日基準 國內公知 公用 內外國刊行物
臺 灣	1944~86年法 (1944年)	飲食物 嗜好品	18年(出願日) 15年(出願公告日)	實施 定義 無. 強制實施權 (公告日=特許付與日로부터 4年後) 取消 (強制實施權設定 公告日로부터 2年後) 強制實施權者의 不實施에 대 한 實施權의 取消 強制實施權設定後, 特許權者의 不實施에 대한 特許權의 取消 輸入은 不實施에 포함된다.(68 條)	出願日基準 內外國公知公用 內外國刊行物
香 港	1932~79年 特許登錄條例 (1932年)		英國特許의 殘存期間	無	
싱 가 폴	1937~59年 英國特許登錄法 (1937) 1968年 特許 (強制實施權)法		英國特許의 殘存期間	強制實施權 (英國特許付與日로부터 3年後, 特定分野에만) 取消 (強制實施權 設定으로부터 2 年後)	
인 도	1970年特許法 1972年 施行 (1911年)	食品, 醫藥, 化學物質(合金, 光 學用 그라스, 半導體, 金屬間 化合物을 포함)	14年(特許付與日) 食品, 醫藥特許(特許 付與日로부터 5年, 또 는 特許日=完全明細 書 提出日로부터 7年 中 먼저 만료하는 기 간)	實施 定義 無. 強制實施權 (特許付與日로부터 3年後) License of right(特許付與日 로부터 3年後) 取消 (強制實施權設定日로부터 2年 後) 輸入은 實施로 보지 않는다. (83條)	出願日基準 國內公知公用 內外國刊行物
필 리 핀	1946~78年法		17年(特許付與日) (改正法案에서는 出 願日로부터 12年, 5年 延長可)	實施 定義 有. 強制實施權 (特許付與日로부터 2年後) [特許付與日로부터 3年後] [Provisional License가 強制 實施權 付與申請日로부터 180 日後 申請可] 輸入은 實施로 보지 않는다.	發明日基準 國內公知公用 出願日基準 內外國刊行物 [國內公知公用]

海外特許情報

파리條約 加盟年	WIPO 條約 加盟年	GATT 加盟年	出願 公開	審 查 請 求	出願公告 (異議申請)	備 考	소프트웨어(프로그램) 保護立法
1899	1975	1955	1年6 個月後 (出願日)	7年以內 (出願日)	有 2個月以內 (公告日)		著作權法(1984年 改正)
			無	無	有 3個月以內 (公告日)	微生物特許 및 그밖에 있어서 特許法 改正을 檢討中	著作權法(1985年 改正)
		1986				新特許法案 檢討中. 獨自의 特 許法은 없고 英國에서 취득한 特許를 5年以內에 香港에서 特許登錄받는 制度	著作權法(1988년부터 1985年 英國 著作權, 컴퓨터, 소프트웨 어 改正法을 適用)
		1973				新特許法案 檢討中. 獨自의 特 許法은 없고 英國에서 취득한 特許를 3年以內 싱가포르에서 特許登錄 받는 制度	著作權法(1987年 制定)
-	1975	1947	無	無	無 4個月以內 (公告日)		著作權法(1984年 改正)
1965	1980	1979	無 [18個月 後, 出願 日]	無 [6個月 以內, 公開日]	無	1989年 特許法改正法案審議中, 先發明主義로부터 先願主義로 []內는 改正法案發明日前的 外國刊行物 記載는 포함되지 않는다.	知的財産權法(1972年 制定)

海外特許情報

태국	1979年 制定	飲食物 醫藥品	15年(出願日)	實施定義無, 實施前 第三者는 特許製品의 輸入可(77條) 強制實施權 (特許付與日로부터 3年後) 取消 (特許付與日로부터 6年後)	出願公告日基準 國內公知公用 內外國刊行物
말레이시아	1983年(法律291) 1986年 改正 1986年 發效		15年(特許付與日)	實施定義 無, 強制實施權 (特許付與日로부터 3年後)	出願日基準 內外國公知公用 內外國刊行物
인도네시아	1989年 制定 (1991年8月1日 施行)	飲食物	14年(出願日)	實施定義 無 強制實施權 (特許付與日로부터 36個月後) 取消 (特許付與日로부터 4年後) 輸入은 實施로 보지 않는다. (20條)	出願日基準 國內公知公用 內外國刊行物
멕시코	1987年法 (1986年 成立) (1832年)	飲食物(人間用) 從來, 醫藥, 化學物質은 發明者證만으로 付與. 現在 方法特許가 付與되는 반면, 1987年法에서는 物의 特許만 付與된다.	14年(出願日) (1976年法에서는 10年)	實施 定義 有, 強制實施權 (特許付與日로부터 3年後) 取消(權利失効) (強制實施設定日로부터 2年後) 輸入은 實施로 보지 않는다. (43條)	出願日基準 內外國公知公用 內外國刊行物
브라질	1971年法 (1830年)	醫藥, 飲食物 (方法特許 포함) 化學物質	15年(出願日)	實施 定義 有, 強制實施權 (特許付與日로부터 3年後) 取消 特許付與日로부터 4年後, 強制實施權이 設定되었을때 5年後, 繼續 2年間의 實施中止 輸入은 實施로 보지 않는다. (33條)	出願日基準 內外國公知公用 內外國刊行物
아르헨티나	1864~57年	醫藥	5, 10, 15年 (特許付與日)	實施 定義 無(判例) 取消 (權利失効) (特許付與日로부터 2年後)	出願日基準 內外國公知公用 內外國刊行物

海外特許情報

-	1989	1982	不定 (形式要件을 만족한後)	5年以内 (公開日)		Thai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은 藥事法에 의한 醫藥登錄制度의 改正案을 1989年10月1日에 公表. 이것은 新藥의 發明者에 대하여, 3~4年間의 市場 獨占을 確保하려는 것임.	1988年4月 著作權法改正案 下院에서 可決되었지만 그 直後에 解散되었다가 成立됨.
1989	1989	1957	無	18個月 이내 (出願日) 豫備調査는 6個月 以內	無		著作權法(1987년에 1969年 法을 廢止한 新法制定)
1950	1979	1950	6個月 以內 (出願日) 優先權 申請의 경우 12個月 以內	3年以內 (出願日)			著作權法(1987年 改正)
1903	1975	1986	無	1年과 90日 以內 (出願日)	無	1987年 發明·商標法 改正 檢討中	컴퓨터命令(Decreto, 소프트웨어의 登錄에 관한 教育省令, 1984年) 著作權에 관한 保護를 肯定한 判例가 있다.
1884	1975	1947	18個月 後 (出願日)	24個月 以內 (公開日)	90日以內 (公告日)		소프트웨어의 知的財産 保護에 관한 法律(1987年)
1967	1980	1967	無	無	無	新特許法(案)은 議會에 提出 심의중	著作權에 관한 保護를 肯定한 判例가 있다.

〈白仁洪記〉